

TaxFlash

2026년 10월 / No. 14



Page 1

Indonesia updates tax objec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relief procedures

Page 3

Tax policy on the reduction or waiver of administrative sanctions

인도네시아, 세무 이의신청 및 행정제재 구제 절차 개정

재무부 장관(MoF)은 PMK-71¹을 발표하여, 세무 정정, 이의신청, 감액, 취소 및 행정 구제를 규율하는 PMK-118²를 개정하였습니다. PMK-71은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며, 세무 분쟁 해결 및 행정제재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MK-71이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1. 세무 이의신청 절차

a. 이의신청 심사 중 정보 교환

국세청(DGT)은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b.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회신 기간

납세자는 초청장(*Surat Pemberitahuan Untuk Hadir*)이 발송된 날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종전 규정의 '발송일 부터'와 상이함).

2. 행정제재 구제 절차

a. 구제 대상 행정제재 중 일부 제외

현행 세법상 세액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SKP*) 및 세금징수서(*Surat Tagihan Pajak/STP*)에 따라 부과된 행정제재(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 관련 포함)는 감액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MoF Regulation No. 71 Year 2026 (PMK-71) dated and effective from 2 October 2026

2. MoF Regulation No. 118 Year 2024 (PMK-118) dated 27 Decem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

다만, PMK-71은 다음과 관련하여 발급된 STP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제재를 구제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이 내려진 후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30% 가산세(일반 조세규정 및 절차에 관한 법(*Ketentuan Umum Perpajakan/KUP*) 제25조 제9항);
- 항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60% 가산세(KUP 법 제27조 제5d항); 또는
- 사법심사 판결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60% 가산세(KUP 법 제27조 제5f항).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 행정제재의 감액 또는 취소 신청은 계속하여 PMK-118에 따라 처리됩니다.

b. 행정제재 구제를 위한 납부액 총당

PMK-71에 따르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정제재 금액을 산정할 때 납부액은 먼저 미납 세액 원금에 총당되어야 합니다. 초과분은 이후 행정제재 또는 PBB 행정 가산금에 총당될 수 있습니다. PMK-118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PMK-118	PMK-71
신청서가 제출된 달 이전에 이루어진 납부액은 다음 항목 간에 비례하여 배분되었습니다: • 세액 원금; 및 • 행정제재 또는 PBB 행정 가산금.	납부액은 먼저 미납 세액 원금 또는 PBB 원금에 총당됩니다.
신청서 제출과 같은 달에 이루어진 납부액은 세액 원금에 대한 납부로 취급되었습니다.	원금이 전액 정산된 후 초과 납부액은 다음에 배분됩니다: • 행정제재; 또는 • PBB 행정 가산금.

c.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

PMK-71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하여 국세청(DGT)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최대 2년간 행정제재를 감액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 신청 기간은 KUP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재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한 세무 정책

납세자의 준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DGT)은 국세청장 결정 KEP-239³을 발표하여 행정제재를 **25%~100%** 범위에서 감액 또는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감액 또는 면제 비율은 세무신고서 제출 시기, 세금 납부 시기, 행정제재의 구체적 유형 및/또는 각 범주별로 규정된 기타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제재의 감액 또는 면제는 납세자 준수 모니터링, 세무조사, 세금 징수 및 세무 데이터베이스 강화 활동의 네 가지 범주로 제공되며, 국세청이 정한 구체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KEP-23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 행정제재의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지연 제출:** 2025 회계연도까지의 과세연도 연간 소득세 신고서(AITR) 및/또는 2026년 9월까지의 과세기간 월별 세무신고서(MTR)로서 세금 과소납부 상태인 경우, 해당 신고서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제출된 때.
- b. **자발적 수정신고:** 2025 회계연도까지의 과세연도 AITR 및/또는 2026년 9월까지의 과세기간 MTR로서 세금 과소납부 상태인 경우, 수정 신고서가 **제출되고** 납부할 세액이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납부된 때.
- c. **세금 지연 납부:** 2025 회계연도까지의 과세연도 AITR 및/또는 2026년 9월까지의 과세기간 MTR과 관련하여, 해당 신고서가 **제출되고** 납부할 세액이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납부된 경우.
- d. **세무조사 결과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세액결정서 또는 세금징수서 (PBB 포함): 관련 세액 원금이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된 경우.
- e. **2026년 10월 8일 이전에** 발급된 세액결정서 또는 세금징수서 (PBB 포함): 관련 세액 원금, 납부할 세액 및/또는 행정제재의 일부가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된 경우.
- f.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세금징수서 (PBB 포함): 관련 세액 원금, 납부할 세액 및/또는 행정제재의 일부가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된 경우.
- g.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에 따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산 관련 세액결정서**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PPS*, 재무부령 제196/PMK.03/2021호 적용)로서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되고, 관련 세액 원금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부된 경우.



납세자는 2028년 10월 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행정제재의 감액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납세자는 PMK-71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일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송 또는 기타 법적 구제수단을 진행하지 않을 것(서명된 진술서로 증빙);
- 이전에 제기한 법적 구제수단이 모두 취하되었을 것(취하 증빙 제출);
- 행정제재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납세자가 서명하여 제출할 것; 및
- 아직 납부되지 않은 행정제재에 대해서만 신청할 것.

PMK-71 제24조에 따라 적격 납세자는 행정제재의 감액 또는 면제를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신청은 국세청이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PBB 행정 벌금의 감액 신청은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의 유형, 적용되는 감액 또는 면제 내용, 구체적인 요건 및 사례 예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EP-239의 부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General Inquiries

Suyanti Halim
Abdullah Azis
Alexander Lukito
Andrias Hendrik
Anton A Manik
Antonius Sanyojaya
Brian Arnold
Gadis Nurhidayah
Hendra Lie
Hisni Jesica
Lukman Budiman
Margie Margaret
Omar Abdulkadir
Otto Sumaryoto
Turino Suyatman
Yuliana Kurniadjaja
Yunita Wahadaniah

Tax/Customs Technology and Governance

Avinash Rao

Legal and Inward Investment

Indra Allen
Adi Pratikto
Danar Sunartoputra
Fifiek Mulyana

Customs

Enna Budiman

Transfer Pricing

Ay Tjhing Phan
Dexter Pagayonan
Hasan Chandra
Peter Hohtoulas
Ryuji Sugawara

TLS Surabaya

Yessy Anggraini

Pillar Two

Nicholas Sugito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